예금보험공사
보호금융상품
1인당 최고 5천만원

이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기재된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금융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보호금융상품등록부

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.

붙임: 1. 보호금융상품 목록
2.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 목록

금융회사명 : ㈜리딩투자증권

(기준일 : 2022년 1월 1일)

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(☎1588-0037, www.kdic.or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정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.

※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.

이 문서에 대한 소유권은 리딩투자증권에 있으며, 동의 없이 수정, 변경 및 복사할 수 없습니다.

(붙임 1)

보호금융상품 목록
(2022년 01월 01일 현재)

※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,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. *(보험사가 아닌 경우 생략)*

번호	계정과목	금융상품명	판매중단일	비고
1	위탁자예수금	위탁자예수금(현금잔액)		
2	저축자예수금	일반적립식증권저축예수금(현금잔액)		2009.02.04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신규개설 불가
3	기타예수금	외화증권계좌예수금(현금잔액)		
4	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	수익자예수금(현금잔액)		

이 문서에 대한 소유권은 리딩투자증권에 있으며, 동의 없이 수정, 변경 및 복사할 수 없습니다.

(붙임 2)

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 목록
(2022년 01월 01일 현재)

※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,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.*(보험상품이 없는 경우 생략)*

번호	금융회사명	금융상품명	비고
□ (상품종류)			
1		(실제 판매시 사용하는 상품명을 가,나,다 순으로 기재함)	
2			
		모든 상품 해당사항 없음	
□ 보험			
1	*AA생명*	*가족사랑종신보험*	
2	*BB화재해상*	*운전자상해보험*	
3	*CC화재해상*	*자녀안심상해보험*	
□ 퇴직연금제도			
1	*DD은행*	*더좋은 정기예금*	
2	*EE증권*	*브라질마켓증권투자신탁*	
3	*FF저축은행*	*플러스 정기적금*	
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			
1	*GG은행*	*다모아 정기예금*	
2	*HH저축은행*	*더드림 정기적금*	
3	*II증권*	*유망중소형증권투자신탁*	

이 문서에 대한 소유권은 리딩투자증권에 있으며, 동의 없이 수정, 변경 및 복사할 수 없습니다.

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변동내역

1. 추가된 신상품의 목록

번호	계정과목	금융상품명	상품특징	판매일자
		해당사항없음		yyyy-mm-dd

2. 삭제된 상품의 목록

번호	계정과목	금융상품명	판매중단일	비고
		해당사항없음		

금융기관명: ㈜리딩투자증권

(기준일: 2022년 01월 01일)

<작성요령>
직전분기에 제출된 보호금융상품등록부와 비교하여 새로 추가된 신상품 또는
판매중단 후 잔액이 소멸되어 삭제된 상품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명을 기재함

이 문서에 대한 소유권은 리딩투자증권에 있으며, 동의 없이 수정, 변경 및 복사할 수 없습니다.

※ 예금자보호제도 안내

구분	보호금융상품	비보호금융상품
증권	■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,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■ 자기신용대주담보금,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,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■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	■ 금융투자상품(수익증권, 뮤추얼 펀드, MMF 등) ■ 선물·옵션거래예수금, 청약자예수금, 제세금예수금, 유통금융대주담보금 ■ 환매조건부채권, 증권사 발행채권 ■ 종합자산관리계좌(CMA), 랩어카운트, 주가지수연계증권(ELS), 주식워런트증권(ELW) 등

예금자보험제도

■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등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
보호대상 금융기관

■ 은행(농· 수협중앙회 포함, 농 · 수협 단위조합 제외), 증권회사, 보험회사, 종합금융 회사, 상호저축은행 등의 예금 등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.

■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하여 2003년 말까지만 보호되었고, 2004년부터는 신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하여 보호되며, 농· 수협 단위조합은 각 중앙회의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하여 보호됩니다.

1인당 보호한도

■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.

■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,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.

■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.

기타 유의사항

■ 예금보험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예금 명의인에게 지급합니다.

이 문서에 대한 소유권은 리딩투자증권에 있으며, 동의 없이 수정, 변경 및 복사할 수 없습니다.